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3월 3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4월 10일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5월 15일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주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조건(안 제3조, 제4조)
 - 지원조건 :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 및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 시 지원

○ 지원기준 및 제한 등(안 제5조 ~ 제10조)

- 지원기준 : 신청 당시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80퍼센트 이내
- 지원제한 :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영·관리 및 기타사항 등(안 제11조, 제12조)

- 운영·관리 : 준공 후 건축물 대장 등재 및 마을회 소유로 등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 마을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개선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마을회관 관리와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원조건과 지원기준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